

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5년 2월 13일
복지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년 1월 23일, 운영희 의원

나. 회부일자 : 2025년 1월 23일

다. 상정일자 : 제2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
제1차 복지건설위원회(2025년 2월 13일)

○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종사자의 복지 등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에 앞장선 장기요양기관의 공적을 치하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1) 처우개선 사업 등 신설(안 제6조제1항제4호, 제5호)
- 2) 표창 신설(안 제8조의2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나. 검토의견

1) 개정 이유

- 본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의 건강한 근로 환경과 사회적 인식 개선 등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
2) 주요 내용

가) 처우개선 사업 등 신설(안 제6조제1항제4호,제5호)

-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
-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

나) 표창 신설(안 제8조의2)

- 우수 기관에 대한 표창 수여를 신설함

3) 검토 의견

- 노인요양이 필요한 대상자는 늘어나는 반면 요양보호사들의 업무환경은 개선되지 않아 현장에선 인력이 줄어들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장기요양기관의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해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